

글로벌 아티스트. 프리랜서에게 보내는 초대장

- 프랑스/에스토니아/두바이 -

유럽각국은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 장기체재자에게 정부가 사회보장을 책임지기에 유럽멤버국 이외의 외국인의 장기체류신청자의 경제적 자립능력 증명과 건강진단을 필수로 한다. 정부가 사회보장을 (스위스 제외), 높은 세금의 나라, 프랑스에서 제로-최저세금과 많은 시정지원을 받는 세계문화인들의 영예로운 초대... 외국인 아티스트 전문활동. 근대의 모던아트의 창을 열은 프랑스는 컨템포러리.예술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미국,독일,영국,홍콩 등에 뒤쳐졌으나 외국인 아티스트,프리랜서들의 교육,전문활동,정착 (또한 거주지역 시정을 통한 지원을 포함) 위한 사회적 도적 정비가 다른 나라들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출중하다.

선진국들이 사회.문화복지정책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인들을 적극 수용하고 저 하는 자국의 장려정책이 있으나, 영국, 미국등도 매년 수십-수백명 정도의 극소수에 한정, 영주권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전문활동중 현저하게 저렴한 사회보장비 (연간소득의 17% 부담금)로 건강보험 및 노후,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불의무를 최저로 낮추어 Agessa, MDA 협회의 관할하에 둔 프랑스의 아티스트 등록 및 전문활동 절차를 설명한다.

숫자로 말하면, 프랑스 자영업자의 3%가 외국인이고, 사업주중 5%가 외국인이다. 최근 수년간 이민들을 적극 수용한 독일의 경우 이민자들의 자영업 및 사업주 등록이 20%에 육박하며, 초기 수년간 시행착오 및 사회적응기간을 거쳐 성공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 영국의 성공한 최고 경영자들이 이민자 출신들이며, 2006년 경제대란을 맞은 유럽각국은 다투어 Entrepreneur/StartUp 이민정책을 내놓아 능력있는 해외이민자들의 스타트업.경영인이 자국의 경제활성화 기여에 큰 기대를 걸고 적극 유치하고 있다.

전문활동과 체재자격

많은 학생들이 프랑스에서 공부를 마친 후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직업을 찾고 직업 변경과 같은 신분을 바꾸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프리랜서 참여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아티스트, 예술가 혹은 자영업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거주하는 체재자격변경 절차가 필요할 뿐이다.

학생은 장기체재자 신분이므로 아티스트,프리랜서,자영업 (Profession Libérale)를 신고한후 체재자격변경을 하면 되지만, 사업체는 장기레지던트 카드소유자만 대표가 될수 있는 제한이 있어서 옆 유럽 국가들과 다소 다르다. 하지만 영국, 벨지움, 독일, 룩셈부르크, 헝가리, 폴란드...등은 패스포트를 들고 가서 은행구좌 오픈, 회사설립을 하여 레지던트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성격에 따라 한국에 돌아

가 사업자 비자를 발부받아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경우도 발생).

정책 측면에서, 프랑스도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자영업자 및 소기업을위한 많은 정책 지원 및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 언어가 부족하고,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신뢰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프랑스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 자영업자부터 설명해 본다.

학생자격으로 자영업자 (Profession Libérale)를 등록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전산으로 등록하고 기본 정보상세와 사업내용을 기입하고 소액의 등록 비용을 지불하면 2주일내에 부족서류요청 편지나 혹은 등록번호가 배달된다. 자영업시에는 상사와 직원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비용이 낮고, 세금이 적으며,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통제하고 고객 기반에서 명성을 쌓는 한 미래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신분은 거주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영업자인 경우, 우선 학생 기숙사, 취업 기숙사 등 프랑스에서 일할 수 있는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프랑스에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급여직원은 할 수 없다. 2006년 7월 24일의 법에 따르면 전문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거주지를 얻으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물론 EU 거주자인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여기사 다루지 않는다.

자영업을 기반으로 사업자 거주자격 또는 프리랜서 장기거주 신청/체재자격 변경을 할 수 있다. 또한 돈을 벌어야하는 학생이나 이미 직업을 가지고있는 직원을 위해 소득을 창출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미 프랑스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지 관할구청 (Préfecture de Police)에 체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전문활동 및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른 양식을 작성해야하며 목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상세 외에도 사업체는 자본금, 운영예산 및 사업계획도 제공해야 한다. 요컨대, 프랑스에서의 자본 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출한 정보가재가 완료되면 관할구청에서 등록증과 임시체류카드(Récepissée) 받아 전문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체류허가신청이 최종 거부되면 관련 비즈니스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프랑스에 오래 살지 않지만 프랑스에서 독립적으로 경력을 쌓고 싶은 외국인도 있다. 시작하기 전에 프랑스 경찰서나 경

영 관리기관에 지원해야 한다. 제출한 자료가 완성되고 계획이 실현가능한 경우, 구청에서 발급한 임시체류 카드를 받게되며 자영업자가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CFE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용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
거주지 증명 (렌탈계약서) / 유효한 여권 / 출생 증명서 / 기혼자는 livret de famille 및 동거파트너의 신원 증명서 / 증명사진 / 객실 또는 전기요금 등 거주 증명서 / 전년도의 납세증명서 / 무범죄 증명서 / 이전 국가의 무파산 증명서
*사업계획 및 타당성 보고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정보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을 증명할 수 있다 ;
-무역정책 및 이행수단을 중심으로 3년간의 예산 및 계획
-명확한 회사업무 및 자산관리플랜
-프랑스 신용기관 또는 보험회사의 은행거래내역 및 보증
-사업용 임대 또는 약정

어떤 경우에는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래자금의 취득, 임대관리, 자회사 설립, 외국자금지원 법인설립.

기존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회사의 등록자료 (회사의 kbis가 3개월이상이어야 함), 관할기관의 의도서한, 회사 정관, 임대계약, 사업주소, 회사의 재무 상태 및 지불, 세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체를 기반으로 한 Alternative Residence Europe

프랑스의 경제기반은 독일,영국 다음으로 세번째 유럽경제 주요국가이지만 (25%)~60%(급여자)사회보장비용이 매우 높으며, 오래된 사회시스템의 시간지체, 높은 세금 (34%)과 VAT 비용을 감안한다면 프랑스에 장기체류증 목적으로 사업체운영은 권장하기 어렵다. 굳이 유럽 장기체제가 단순목적이라면 장기체재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기초 사회보장비 및 기타 의무부담이 프랑스에 비해 현저하게 3배까지 저렴한 동구권에 회사를 설립하면 1-2개월내에 임시체류증(1-3년짜리)을 받아 3-5년간 체류증 갱신을 저렴하게 또한 수월하게 하여 (한국여권은 유럽내 각6개월내 3개월 체재권한 및 유럽내 타국 체재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유럽권내 최대 6개월 체재가능) 유럽 한나라의 영주권을 받아 (유럽연합국은 한나라에 5년이상 정상체제하면 영주권신청 권리가 주어진다. 룩셈부르크,그리스,스페인 제외) 유럽 어느나라에서든 정상적인 유럽장기 체제가 (스위스 제외) 사실상 가능하다. (주의-유럽시민권자는 유럽타국에서 6개월 이내에 정규수입증명만으로 장기체류증을 받을수 있으나, 영주권자는 최대 3개월의 제한기간이 있음)

프랑스 장기체류 및 추후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경제적인 수입원 (sustainable income)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초기 4-5년은 최저임금 SMIC 기준 1.5배의 소득증명을 준비하면 체류증 갱신, 신분변경, 영주권 취득이 순조롭다. 아티스트, 프리랜서, 자영업 행정절차는 구비서류를 잘 갖추고, 체류사유와 수입증명이 가능하면 굳이 변호사의뢰를 할 필요가 없으나, 투자자 및 고용분쟁이 예상되는 합자회사는 전문변호사 선임이 현명하다.

자영업-개인사업-합자회사 아티스트 프리랜서 부과금 비교

*자영업자 (Profession Libérale) 소득기준 (44 576€) 부과금 약 25%

병원-산아 Maladie-maternité 6.5%
사회보장 CSG-CRDS 9.7% URSSAF
Assurance vieillesse de base 8.23%
교육비 CFP 101E

*개인사업자 (44 576€)

상업인, 직인, 산업제조인 부과금 약 49%

병원-산아 Maladie-maternité 6.35%
사회보장 CSG-CRDS 9.7% URSSAF
노후보험 8.23%

은퇴비-최대 40 524 € 17,75 %

은퇴보조 8 %

회사는 이외에도 전문영업활동세가 있으며 사업자는 소득에 따른 세금 (28-34%)을 별도 납입해야 한다.

프랑스에 사업자 자격으로 정착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급여자 혹은 전문직이 유리하며, 상업활동보다는 건축사, 의사 (외과, 치과), 노인복지, 전문컨설팅, 부동산 에이전시 등 언어가 다소 부족해도 정착이 용이하다. 더우기 많은 예술분야의 전문인들은 아티스트, 프리랜서 비상업 전문활동 BNC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4년이상 장기체재를 통해 10년 레지던트카드(영주권)를 받을 수 있다.

* Agessa/MDA 가입 아티스트 부과금 약 17%

(CSG 9,20% / CRDS 0,50% / 노후보험 6,90%)

* 노후보험비는 2019년부터 선지불의무로 변경되었으며 선불. 건강보험 SECU (최대 40 524€ 기준 2019) 부과금은 최대 2.796€ (2019년도).

Agessa & MDA (Maison des Artistes) 가입번호 무효화 : 2019년 초부터 Agessa & MDA 협회를 통한 가입번호는 무효하며, 기존 협회번호들은 전년도 2018년도 및 이전의 정산액들을 위해만 이용될 뿐 아티스트, 저작권자의 가입번호는 SECU (Sécurité sociale) 번호로 대신하여 유일한 사회보장혜택의 열쇠이다.

노후비용 평가 선지불 의무 (le Précompte de la cotisation de vieillesse plafonnée) 이전에는 노후비용 평가 선지불이 없었으나, 2019년부터는 Agessa & MDA 협회 가입자들은 선지불 요청을 받게 된다. 아티스트 및 저작권을 급여와 임금으로 수령했을 경우는 배포업체 (고객, 출판사, 단체 관리 조직 ...)가 이비용을 감산 (감산증명을 아티스트에게 보내줌)하여 Urssaf에 직접 납입한다.

아티스트 지불 / 급여 소득원이 SECU (40 524 euros 2019) 이상일 경우 선과다지 불액은 Urssaf 관청에 2020년 4월부로 환불신청이 가능하다.

비상업 아티스트 수입원은 (BNC), 배포업체의 선지불의무가 없어지며, 2019-2020년도 아티스트 신청자는 avis-situation-sirene.insee.fr 다운로드로 간편해진다. 전문활동 업종등록 Sirene번호 입수 및 등록상황 2019-2020 (과도기간)은 avis-situation-sirene.insee.fr 으로 간편해지며, <선불.지불면제 증명>은 Urssaf 관청이 보내준다.

Agessa / MDA 협회 가입의무

아티스트, 저작권자들의 건강보험, 노후보장 혜택을 위해 가입되며, 매 3개월마다 지불하는 회비는 2019년 기준 1 505 € 단위로 은퇴비 3개월 산정기준으로 하며, 연간소득이 최저임금 Smic 900시간에 해당하는 (연간소득 9 027 € 2019)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 병가, 출산, 앵발리드, 사망에 따른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말부터는 Urssaf 웹사이트로 다이렉트 가입할 수 있다.

www.artistes-auteurs.urssaf.fr

2020년 4월 15일자로 비상업 아티스트 전문활동 소득(BNC) 신고한 후 15일 간내 수정이 가능하다. 시간당 소득의 150배인 1.505€ 금액마다 / 2019 소득기준으로 부과금을 산정하여, 이듬해 매 3개월마다 4회에 걸쳐 소득변화에 따라 정산한다.

에스토니아 e-Residency

세계최초의 글로벌 전화통화를 실현했던 스카이프의 나라. 인터넷 강국 한국을 제치고 늘 선두를 지켜온 e전자정부의 글로벌 모델이자 론리플라넷 가이드북이 추천 1위의 나라. 에스토니아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한국 및 해외에서 인터넷상 ID카드를 발부받아 유럽시장 프리랜서 진출이 가능한 e-Residency Estonia. (온새미 Önomad 11월호 에스토니아편 참고)



두바이 외국인 비거주자를 위한 가상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 출시 2019년 10월 1일

두바이는 "외국인 비거주사업 허가증"을 시작했는데, 거주지 의무가 없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최초의 가상 상용 라이선스인 이 라이선스는 두바이에 거주하지 않아도 부여된다"고 Khailee Times 신문에 의해 인용된 두바이 경제 개발국의 총 책임자인 Sami Al Qamzi의 발표되었다. 이 라이선스는 1년 동안 AED 850, 또

는 233 USD, 2년 라이선스의 경우 AED 1,508 (US \$ 411), 3년 AED 2,161 (US \$ 589) 비용이 소요된다.

Khaleej Times에 따르면 가상회사는 UAE 이외의 거주자를 대신하여 두바이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 회사의 소유자는 특정 국가의 시민 또는 거주자여야 한다. 이 가상기업들은 인쇄 및 광고 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디자인 활동과 같은 특정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가상 라이선스는 투자자들이 거주지 없이 두바이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프리랜서 언론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인 걸프 뉴스는 설명했다. 이 라이선스 보유자는 문서서명 및 디지털체출을 포함하여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관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소스를 추가한다. 그러나 부여된 가상 라이선스는 UAE에 물리적으로 자동 액세스할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Khaleej Times는 말했다.

아랍 에미리트와 이중과세방지계약을 체결한 약 120 개국의 국가들은 이 가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으며 두바이 버추얼 커머셜 시티 (Dubai Virtual Commercial City)에서 발표 한 지도에 따르면 한국도 포함된다.

일천만 글로벌 노마드 라이프 시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의 해외 체재자 Expat 인구가 480여만명으로 일명 디지털 노마드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유럽인, 프리랜서를 합동하는 글로벌 프리랜서 300여만명을 합하면 이미 수년내 일천만명의 디지털 EXPAT 노마드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는 젊은 신혼 부부가 인터넷을 이용한 프리랜서 창작, 디지털 아트, 웹디자이너, 블로거, 금융투자 상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투자 및 컨설팅을 통해 높은 수입을 얻으며 각 나라에 몇개월, 수년씩 장기간 체재하며 생활하는 라이프스타일로 자유로운 글로벌 모빌리티를 필수로 하여, 입국제한을 받지 않는 선진국 패스포트 소유자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프리랜서 전제로 한다. 한국은 이미 독일,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최다국 비자프리 패스포트 랭킹보유국답게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보다 더 많은 비자프리 웨이버) 190개국 비자프리. 공항 엔트리 비자 웨이버로 세계각국을 자유이동하며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30년만에 촌동네가 개벽한 실리콘 벨리, 룩셈부르크, 두바이 신도시처럼 이제 노마드들의 Expat랜드나 인간메뚜기떼들이 잠시 멈춰가는 Expat 아일랜드가 탄생할 시대가 왔다. 실제로 수십억 가입자 페이스북, 십억 WeChat 커뮤니티를 통한 국경없는 프리랜서 황금기를 누릴 시대가 왔다. 어느나라(들)를 선택하여 최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11월호엔 외국인 스타트업을 적극 유치, 지원하는 20개국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두바이/에스토니아/프랑스/독일/이태리/영국/벨지움/포르투갈/그리스/미국/캐나다)
아티스트-프리랜서 영주권문의 :
GlobalResidence21@gmail.com)